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시행

1. 관련근거
 - 가. 사규관리규정 제15조(사규의 시행)
 - 나.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-943호(16.4.12.) 『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』
 - 다.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8619호(16.7.28.) 『투자·출연기관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알림』
 - 라. 경영감사처-2943호(16.8.25.) 『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(안) 확정』
2.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 - 가. 주요 개정 내용
 -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관련 서울시 권고사항 반영
 -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방지 조항 신설 (제7조의2)
 - 임직원의 부당한 목적의 재취업 제한 조항 신설 (제14조의5)
 -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 반영
 -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관련 외부집합교육 실시 의무화(제31조)
 - 나. 시행사규

사 규 명	시행번호	시행일	소관부서
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	규정 제898호	2016.8.29.	경영감사처

- 붙 임 1.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(안) 1부.
2. 임직원행동강령 1부. 끝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

수신자 나1~나43, 다1~다52, 라1~라3

과장 도금수

처장 하성우

실장 08/29
김병선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2484 (2016.08.29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037 전송 02-6311-4288 / dks0605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